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6 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이장섭·홍익표·인재근

강훈식 • 전용기 • 송갑석

변재일 · 신영대 · 김주영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,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 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, 특허 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6 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22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5조제2항 중 "고소가 없으면"을 "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)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5조(침해죄) ① (생 략)	제225조(침해죄) ① (현행과 같
	<u></u>
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	② <u>피해자의 명</u>
면 공소(公訴)를 제기할 수 없	시적인 의사에 반하여
다.	<u>.</u>